

의안
번호

372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72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2023.1.1.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부서가 분리되어 기업지원은 지역경제과, 일자리 창출 지원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,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, 적용범위, 구청장의 책무 정의(안 제1조~제4조)
- 나.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2조)
- 다.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3조~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사항 : 위원회 신설 관련 자치행정과 사전 협의(적정)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09. 19. ~ 2024. 10. 10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2023년 조직개편으로 ‘일자리경제과’가 ‘지역경제과’와 ‘일자리정책과’로 분과 됨에 따라 기존의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「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짐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,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 용어 중 “기업”의 범위를 성북구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정의하였음.
- 안 제4조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그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·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.
- 안 제2장은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5조(창업 지원) 및 안 제6조(마케팅 등의 지원), 안 제7조(기술개발 지원 등)는 창업 및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, 그리고 기업·대학·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향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는 인력양성 사업 및 특화산업 지원,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규정을 두었음.

- 안 제3장은 기업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,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, 회의 등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우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1)에서 ‘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, 중소기업의 육성,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’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예시로 두고 있고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제2항2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자치입법 대상사무 여부, 조례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 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 -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